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발의연월일 : 2016. 6. 10.

발 의 자 : 신종갑 위원 외 명

1. 주 문

- 가.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2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